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83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신장식·장종태·이해민

장철민 · 김재원 · 정춘생

박은정ㆍ김준형ㆍ황운하

서왕진 · 김선민 · 박지원

차규근 • 전종덕 • 강경숙

이용우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,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"주택담보노후연금"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"주택담보노후연금"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. 즉, 본질적으로 "대출"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.

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조

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	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
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	
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	
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	
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	
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	
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	
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	
·질병·양육 등 가구 특성에	
따른 지출요인, 근로를 유인하	
기 위한 요인, 그 밖에 추가적	
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	
을 감하여 산정한다. <u><단서 신</u>	<u>다만, 「한국</u>
<u>설></u>	주택금융공사법」 제2조제8호
	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
	보증을 받아 지급받는 주택담
	보노후연금 및 같은 조 제11호
	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
	저당대출에 가입하여 지급받는
	주택담보노후연금은 제외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